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17가단52265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나70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17가단5226592 판결

전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최익새, 조세형, 유태훈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박진희

변론 종결 2021. 12. 7.

판결 선고 2022. 3. 8.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5.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5. 13. 접수 제1189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E'이라는 상호의 가맹점 계약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F은 C의 동생으로서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는 F의 처이다.

(2) G는 'H'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과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밴(VAN)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3) 소외 1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는 렌터카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와의 보증보험약정

(1) 소외 회사는 2014. 8. 27.경 I와 그랜저 렌터카 장기 임대차계약(이하 '렌터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6. 18.에는 G(H)와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는 밴 서비스이용계약(이하 '밴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는 이 사건 밴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가맹점에 포스 장비와 단말기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신용카드 거래승인 7,200,000건(월 150,000건 × 48개월) 이상의 거래실적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유지수수료 1억 원을

선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8. 27. C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I와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이용료 및 위약금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I, 보험가입금액 11,169,000원, 보험기간 2014. 9. 17. ~ 2018. 9. 16.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1차 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 그에 따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3) 원고는 2015. 6. 23. C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G와 밴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G,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5. 6. 18. ~ 2019. 6. 17.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2차 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 그에 따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소송제기

(1) 소외 회사는 2016. 3~4.경부터 위 렌터카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6. 5. 26.경에는 폐업신고를 하고서도 G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 I는 위와 같이 이용료가 연체되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렌터카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통보를 한 다음 2016. 4. 19.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렌터카 이용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한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5. 20. I에게 보험금 11,094,88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소외 회사가 이미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G는 이 사건 밴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시부터 2017. 1.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가맹점에서 처리된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수는 총 165,653건에 불과하고, 신용카드 이용 가맹점의 숫자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밴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50개에 현저히 못 미치는 5개에 불과하자, 2017. 2. 6.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밴서비스 이용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한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3. 16. G에게 보험금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C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5.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제수인 피고 앞으로 넘긴 것을 발견하자, 원고는 2017. 7. 21.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10265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2017. 11.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8. 11. 20. 소외 회사와 C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5705호)을 제기하였다

라. 소외 회사와 G 사이의 분쟁발생 및 소송 경과

(1)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소외 회사는 2018. 6. 8. G가 이 사건 뱅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장비수리 요청 등에 불응하였고,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G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가단17517, 합의부 이송 후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62309), G는 오히려 2018. 11. 1.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뱅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773,266,736원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8462, 합의부 이송 후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62316, 이하 소외 회사와 G 사이의 위 소송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관련소송의 1심법원은 2021. 7. 22.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뱅서비스 이용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소외 회사의 본소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G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G에게 309,511,26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21.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1심판결은 소외 회사의 항소장이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C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던 C은, 2016. 5. 1. 제수인 피고와 사이에 C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84,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5. 13. 접수 제1189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별개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진행 경과

(1) C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C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카단102168호), 위 1심법원이 2016. 7. 18.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9. 4. 8. J에게 위 사해행위취소 청구권의 피보전채권액인 10,914,026원을 변제하였고, J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은 2019. 4. 10. 해제되었다.

(3) 본 재판부는 피고에게 J이 채권자인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소송 제기 여부와 그 소송 결과에 대하여 밝힐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는 본인이 당사자임에도 본안소송 제기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변명으로 답변을 회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금융결제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제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6. 4.경 이미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I에 대한 렌터카 이용료를 연체하여 I가 2016. 4. 22.자로 이 사건 1차 보증보험약정에 기초한 보증보험금을 청구하는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2016. 5.

26.에는 소외 회사의 폐업신고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2차 보증보험약정과 관련하여서도 이미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2016. 5. 26. 폐업을 할 정도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G의 보험금 청구로 원고의 이 사건 2차 보증보험금 지급이 현실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C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K의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외형상으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제로는 해당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과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드러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의 수익자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2006. 11. 30. 피고가 소외 L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인데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고, 매도인인 L는 그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7. 1. 8. C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2008. 4. 24.) 및 압류(2009. 10. 14. / 2010. 8. 11. / 2012. 2. 21.), 강제경매개시결정(2015. 9. 2.)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C이 2007. 1. 9., 2008. 5. 13. 및 2010.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을 주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반복적으로 설정한 점,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인 2007. 2. 9.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6. 11. 30.자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C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5. 13. 접수 제1189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상근

별지